제 19 장 학술지 편집위원회

개정 2011년 9월 5일
개정 2012년 6월 22일
개정 2022년 4월 19일

제48조 (설치와 구성) 의과대학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과 발간을 위한 제반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술지편집위원회를 둔다.

1. 편집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년 6월 22일, 2022년 4월 19일]
2. 위원회의 위원장(명예위원장 포함)은 의과대학 학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과 위원은 학문적 업적이 뛰어난 회원 가운데 관련 학문이 분야별 및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위원장이 추천하고 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년 4월 19일]
3. 위원장 (명예위원장 포함) 및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9조 (기능) 학술지편집위원회는 편집과 발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투고 규정
2.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편집에 관한 사항
3.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투고 논문 심사위원 위촉
4.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윤리규정의 제정 및 적용 [개정 2022년 4월 19일]
5. 기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제50조 (임무) 위원회는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의 간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학장에게 보고한다.

1.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개정 2022년 4월 19일]
   - 편집에 관한 사항
   - 접수된 원고의 심사와 게재여부의 결정
   - 필요시 게재료의 결정

2. 교육자료 및 학술자료 발간
3. 출판관련 규정의 정기적 검토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출판관련 업무